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3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  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해양수산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3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807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 시행)됨에 따라,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(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5항, 제7조 제1항,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, 제11조, 제12조)

나.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삭제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사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    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01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4) 법제처 심사 전

##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구성 등)”을 “(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8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위원회는 심의사항과”를 “협의회는 협의사항과”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 중 “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| 제5조(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) ① -----<br>-----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협의회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협의회-----<br>----- 협의회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<br>----- 협의회----- 협의회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분과위원회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는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(이하 “분과부위원장”이라 한다)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분과위원장,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

제8조(회의 등) ① ----- 협의  
회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협의회 -----  
-----  
-----.

④ 협의회는 협의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의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,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,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삭 제>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<br>한 것 외에 <u>위원회 및 분과위원<br/>회</u>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<br>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<br>위원장이 정한다. | 제12조(운영세칙)-----<br>----- <u>협의회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.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0 - 5441 |